남원시
NAMWON CITY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람	기관의 장

제114호 2015. 11. 17(화)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5 - 1388 호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회람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공고 제2015- 1388호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주관「11대분야 지방규제 개선 대상」등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령(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및 제21조의2(시설의위탁) 제2항에서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음

○ 위탁 또는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법제처의 개정의 요구가 있음

2. 주요내용

○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6항)

3. 의견 제출

○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

- 우편번호 : 55738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1),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2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가.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주관「11대분야 지방규제 개선 대상」등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령(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및 제21조의2(시설의위탁) 제2항에서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 위탁 또는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법제처의 개정의 요구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6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 ~ 2015. 11.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에 따라”로,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를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장애인″이라 함은”을 “″장애인″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복지관”을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장애단체”를 “장애인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상 수급자를 우선한다”를 “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부담금 및 기타”를 “부담금,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하며, “수 있으며 다만, 인건

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7조제6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받"을 "위탁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자가 동"을 "수탁자가"로,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경우에는"으로,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남원시에 기부채납하여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를 "따른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할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단될 때"를 "판단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반할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발생할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사전"을 "사전에"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9조에 따라 ----------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11.16	제2조(정의) ---------- "장애인"이란 ----------. ----------
제3조(위치) 복지관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에 둔다.	제3조(위치)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6. ---------- 장애인단체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5조(이용대상) ---------- --------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 --.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자를 위탁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한다.	② ----------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 ---------- ---------- ----------.
③ 시장과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 따라 ---------- ---.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	④ ----------

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부담금, 그 밖에 ---------. ---------- ---------- 경우에는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배치기준(정원기준)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범위안에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으며 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범위---------- 범위---------- -------- 수 ---------- -------. 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⑥ ----------. ---------- ----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 제4조----------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위탁받----------.
④ 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남원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경우에는 ---------- 받아야 ----------.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 따른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 관계 공무원에게 ---------- 그 밖에 ----------.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경우에는 ----------.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1. ----------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 위반한 경우
4.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발생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남원시에 귀속한다.	② ---------- 경우에는 ----------.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자체 운영규정) ----------. ---------- 사전에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시행에 ----------.

[별지 제1호서식]

위 탁 운 영 관 리 신 청 서

명 칭	
사 용 시 설 구 분	
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위 탁 관 리 목 적	
위탁받고자 하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관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를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남원시장을 “시장”이라 하고 복지관의 수탁운영자인 ○○○○○○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수탁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복지관의 시설물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이라고 양쪽 합의된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수탁자”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양쪽 합의에 따른다.

제4조 복지관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관리에 따라 일체의 공과금은 “수탁자” 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관리 위탁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월 ○○일(○년간)까지로 한다.

제7조 “수탁자”는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3. 위탁재산의 대여, 양도 등 일체 처분행위

제9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2.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시장”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장”의 손해에 “수탁자”는 변 상의 책 임을 진다.

제10조 “수탁자”는 위탁관리 계약 시 건물과표에 따른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 발생 시는 양쪽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상 각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 고 양쪽 서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 남 원 시 장

(수탁자) 주 소 :

성 명 :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순증가액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